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합동안전점검 근거 마련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94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5794)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합동안전점검 근거 마련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안 제44조의2, 제39조제1항제3호의3·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5 호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9
1) 국토교통부	9
2) 한국통합물류협회	10
2. 사망사고 발생 시 보고·검사·질문 근거 마련 및 안전확보 노력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보고·검사·질문 근거 마련(안 제44조)	11
가. 개정안의 내용	11
나. 검토의견	13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6
1) 국토교통부	16
2) 한국통합물류협회	17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579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2.
3. 회 부 일 : 2024.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결과보고서가 소수 종사자와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 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합동안전점검 근거 마련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안 제44조의2, 제39조제1항제3호의3·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u>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u>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5. (생략)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3.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u> 4. 5.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u>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현행	개정안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택배기사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2021년 458건, 2022년 상반기 287건, 승인건수가 2021년 287건, 2022년 상반기 258건에 이르고, 배달대행종사자의 경우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연평균 1.7회의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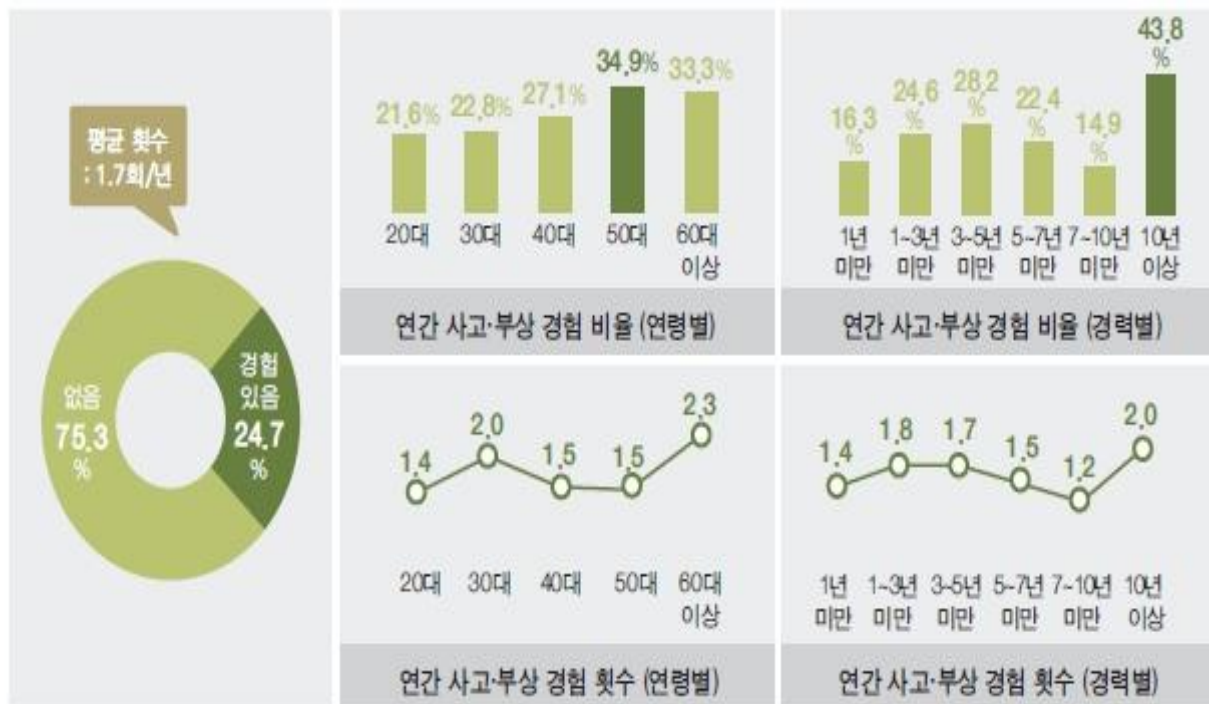
· 부상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

【 택배기사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건수 (건)	76	119	177	458	287
산업재해 승인건수 (건)	70	106	160	417	258

출처 : 윤건영 의원실 보도자료(2022.9.21.)

【 배달대행종사자의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



【 그림 3-35 】 최근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이렇듯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4조의2 신설), 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¹⁾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은 동조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개선권고에 대해서 사실상 개선명령과 같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현행 법체계 상 자유업으로, 일정한 영업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만이 운영되고 있어, 등록제로 운영되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게는 개선명령이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인증제는 동법의 제정(2021. 1. 26. 제정, 2021. 7. 27.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종전과 같이 자유업으로 운영하되, 일정한 영업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우수 업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보임²⁾.

이에 인증제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되 개선권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인증 갱신심사 시 심사항목으로 두거나 개선권고에 대한 입법례³⁾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불이행에 대해

2)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73호, 2020.10.8.) 제안이유 중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동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p.35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은 자유업으로 두되, 이 중 인증을 받은 자만을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인증제를 통해 우수 업체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3) 「수도법」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

서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제1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5조제1항제9호는 개정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사업장 불시점검을 통해 종사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 추진 시 종사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사업자에게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합동안전점검 근거 및 그 결과에 관한 조치 명령 근거 마련에 동의함.

다만, 소화물배송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인증사업자에

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 조치한 권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로, 인증사업자에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매년 인증사업자가 인증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보완필요사항을 통보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고 있고, 배달업(자유업) 인증제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강제적인 이행계획 제출 및 미제출에 따른 인증 취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통합물류협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고,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점검의 목적은 종사자 안전조치 점검으로 이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점검의 성격과 중복되어 실익이 없고, 유관부서와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동안전점검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사망사고 발생 시 보고·검사·질문 근거 마련 및 안전확보 노력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보고·검사·질문 근거 마련(안 제44조)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44조제1항제5호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제44조제2항은 제36조제2항4)에 따른 휴게시설 확보 의무에 대해서만 보고·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안 제44조제2항은 법 제36조제1항5)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노력의무(①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②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③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폭서, 폭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 ----- ----- ----- ----- ----- ----- ----- ----- -----.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 4. (현행과 같음)
2. 제34조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등 생활물류서비스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③ (생략)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소수의 현장 근무자 인터뷰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 제44조제1항제5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44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또는 검사·질문의 대상은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서 보고, 검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44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②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1)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시간·휴식공간 제공, (2)주행로·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시설 확보, (3)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등

6) 한겨레, [단독] 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에도…국토부 현장 검사는 ‘문제 없음’, 2024.9.1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8088.html

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노력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 제44조제2항제1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참고로 안 제44조제2항제1호와 유사하게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노력 의무에 대해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2021.11.1. 발의)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 법 제36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여건,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 및 검사 등 감독관청의 지나친 개입은 ‘노력’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의무’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및 방향과 어긋나며,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유발하여 사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해당 부분은 제외되어 가결된 바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2021.11.1. 발의) 제3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2(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 서비스사업자에게 제3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법」⁷⁾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서 원인조사가 가능하므로 개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7)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만, 종사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의 사망사고 현황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휴식시간 제공여부 등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감독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에 대한 보고·검사·질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함.

2) 한국통합물류협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부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개정안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조치임.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은 안전보건과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현장방문을 통한 원인 규명은 한계가 있으며, 중복업무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원인 규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보고·검사 근거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